

● 제322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3. 7.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이경숙 의원 1인발의(14명 찬성)
- 나. 제안일 : 2024. 2. 5.
- 다. 회부일 : 2024. 2. 7.
- 라. 의안번호 : 1622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존재함에도 현행 조례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기재되어 교육청 제출 의안이 여러 조례에 중복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서식 교정 등을 통해 비용추계 정확성을 개선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와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감을 대상에서 삭제하여 일괄 개선(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안제3조제1항, 안 제4조제1항, 안 제6조, 안 제7조제3항)
- 비용추계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5조 제8항)
- 의안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청권 부여(안 제8조)

### 3.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같음)
- (3)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2.14. ~ 2024.2.18.(5일간)

나) 예고결과 : 없음

####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 : 원안가결

○ 서울시 기획담당관 : 수정가결

※ 서울시의 수정의견에 관하여는 검토보고서 8면 참조.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별도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존재함에도 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교육감에 대해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요청 협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정교한 비용추계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제안되었음.

### 2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의 정비(안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6조·제7조)

- 본 조례안은 비용추계의 대상 의안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는 2015년 제정되면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거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경우에 더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었음.
- 그러나 2016년 7월 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이 중복 규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2016년의 교육청 비용추계 조례의 제정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별도의 기관을 구성·운영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5조와<sup>1)</sup> 「지방교육

1) 「지방자치법」 제135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 121조).

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2)에 따른 것으로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은 교육자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청 소관의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어 원안가결되었고, 이에 현재까지 교육감 제출 의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용추계를 진행해 왔음.

- 별도의 교육청 소관 비용추계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 서울시 의안의 비용 추계 조례에서 교육감 제출 의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 두 조례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정조례안 제1조 등>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서울특별시시장·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서울특별시의회에 각각 제출하거나 발의,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서울특별시시장</u>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비용추계서”라 함은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1. “비용추계서”란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제</u>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과 교육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협의)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 부서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이 각각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 및 서울시교육청 법제심의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그 심의회에 부쳐야 한다.

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  
-----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  
-----  
----- 시장-----  
-----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  
-----  
-----  
-----  
-----  
-----  
-----  
-----  
-----.

제7조(작성부서 및 협의) ① -----  
----- 발의 및 제안하는 ----- 재정분석 담당관-----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 -----  
-----  
-----  
-----.

### 3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안 제8조 신설)

- 본 조례안은 안 제8조에서 의원발의 및 위원회 제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자료 제출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의안의 비용추계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추계하여<sup>3)</sup> 재정지출 및 수입감소를 사전에 점검해 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비용추계를 통해 의안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예산의 효과적 계획 및 집행을 유도하며 의안심사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영향을 미침.
- 의안의 변화에 따른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집행 규모 및 실태, 신규 사업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소관 사무부서의 유사한 사업의 예산집행 실태를 예시로 하여 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추계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되어야 함.
- 이러한 실무 부서와의 협력 과정은 비용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이는 곧 의안 심사 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됨.<sup>4)</sup>

3)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 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4) 또한, 비용추계를 통해 의안심사 과정에서 의안 내용의 질적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음. 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므로 비용추계를 통해 의안의 내용 중 수정사항을 발견해 보완 할 수 있고, 비용추계 과정에서 습득한 자료를 통해 법안심사를 풍부하게 할 수도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원리와 방법-”, 2006, 25면 참조.

- 기존에는 이러한 자료요청에 관한 근거가 서울특별시의회예규인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규정되어 대내적인 효력만 있었으나,<sup>5)</sup>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관련 기관의 자료 요청 협조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향후 의원발의안 등의 비용추계 시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추계결과의 신뢰도를 높여 양질의 의정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한편, 조례안에서는 자료요청의 협조대상으로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들고 있음.
  - 조례안에서 앞서 교육감 제출 의안에 대한 별도의 비용추계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교육감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정비를 하면서도 자료요청의 협조 대상에 교육감을 포함한 것은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본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 이에 서울특별시장 뿐만 아니라 교육감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함으로써 교육청 소관 의원발의안 등의 비용추계에 대해서도 정확도를 높이고 원활하게 비용추계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조례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8조(자료협조) 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의원·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5)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관련자료 요청) 재정분석담당관은 의안비용추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기획담당관의 경우 자료협조 요청 대상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청 비용추계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그러나 현재 의원발의안 및 위원회 제안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근거는 본 조례에 있으므로 향후 교육청 비용추계 조례에 의원발의안 및 위원회 제안 의안을 포함하는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조례에 교육감에 대한 자료협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서울시 기획담당관 일부 수정의견

**검토의견 : 제8조 ‘서울특별시교육감’ 문구 삭제 필요**

- 개정안 제안이유가 교육청 조례 존재에 따른 중복적용 해소이며 타 조문의 ‘교육감’은 삭제되었기에, 조례의 정합성을 위해 제8조의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구 분	내 용
원 안	제8조(자료협조) 시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의원·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안 제8조 신설
수정의견	제8조(자료협조) 시장은 의원·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의원발의 안건 중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를 개정해 규정 필요

#### 4 비용추계서 양식 변경 필요성(별지 제2호서식 관련)

- 조례안에서는 또한 비용추계서인 [별지 제2호서식]의 총 비용 부분 계산식의 표현을 정정하여 비용추계의 결과를 기존에 “세입(a)-세출(b)”로 산출하도록 하던 것을 “세출(b)-세입(a)”으로 수정함.
  - 비용추계는 재정수입의 순 감소분과 재정지출의 순 증가분을 추계하도록 하는데, 의안의 제·개정으로 직접 재정수입의 순감소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현재와 같은 양식 하에서는 총 비용이 ‘음수’으로 표현될 여지가 높아 결과 값을 ‘양수’로 유도하려는 것임.
  - 총 비용 산식을 정정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양수’로 표현, 알기 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본 조례의 비용추계 결과 표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비용추계의 결과 란에는 ‘세입’과 ‘세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조례 제2조의 정의에서는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으로 정의하면서 각각 재정지출은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고 하며, 재정수입은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고 하고 있음.
    - 기존 양식에서 ‘세입’과 ‘세출’을 표기함으로써 일부 비용추계서에는 ‘세입’ 부분에 재정수입의 순 감소분을 추계하는 것이 아닌 해당 사업으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1년 동안의 사업 세출액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사업예산이 편성되고 있던 경우 순지출액이 없다면 비용추계가 불필요함에도 ‘세출’ 부분에 세출예산의 평균액을 향후 소요 비용으로 기입하는 등 혼선이 있었으므로 이를 조례상 정의된 용어로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음.
- ※ 다만 별표 서식 상 재정지출을 ‘지출’으로 표현하고 재정수입을 ‘수입’으로 약칭하여 표현함으로써 교육청 소관 비용추계 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이에 따라 ‘지출’을 상위로 올려 총비용 산출식은 a-b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위치 조정.

**<수정의견> 개정조례안 제5조 및 별지서식**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생략)</p> <p>② <u>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u></p> <p>③ ~ ⑦ (생략)</p> <p>[별지 제2호서식] (앞쪽) ○○○안 비용추계서</p> <p>3. 비용추계의 결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2"></td> <td align="center">연도</td> </tr> <tr> <td align="center">구분</td> <td></td> <td></td> </tr> <tr> <td align="center" rowspan="3">세입</td> <td align="center">○</td> <td></td> </tr> <tr> <td align="center">○</td> <td></td> </tr> <tr> <td align="center">소계(a)</td> <td></td> </tr> <tr> <td align="center" rowspan="3">세출</td> <td align="center">○</td> <td></td> </tr> <tr> <td align="center">○</td> <td></td> </tr> <tr> <td align="center">소계(b)</td> <td></td> </tr> <tr> <td align="center" colspan="2">□ 총 비용(a-b)</td> <td></td> </tr> </table> <p>[별지 제2호서식] (뒤쪽)</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align="center"><u>작성요령</u></p> <p>1. 비용추계 요약</p> <p>1. 비용발생 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p> </div>			연도	구분			세입	○		○		소계(a)		세출	○		○		소계(b)		□ 총 비용(a-b)			<p>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별지 제2호서식] (앞쪽) ○○○안 비용추계서</p> <p>3. 비용추계의 결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2"></td> <td align="center">연도</td> </tr> <tr> <td align="center">구분</td> <td></td> <td></td> </tr> <tr> <td align="center" rowspan="3">세입</td> <td align="center">○</td> <td></td> </tr> <tr> <td align="center">○</td> <td></td> </tr> <tr> <td align="center">소계(a)</td> <td></td> </tr> <tr> <td align="center" rowspan="3">세출</td> <td align="center">○</td> <td></td> </tr> <tr> <td align="center">○</td> <td></td> </tr> <tr> <td align="center">소계(b)</td> <td></td> </tr> <tr> <td align="center" colspan="2">□ 총 비용(b-a)</td> <td></td> </tr> </table> <p>[별지 제2호 서식] (뒤쪽) (현행과 같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align="center"><u>작성요령</u></p> <p>1. 비용추계 요약</p> <p>1. 비용발생 요인 : ----- -----<b>재정지출</b>----- -----<b>재정수입</b>----- ----- ----- -----</p> </div>			연도	구분			세입	○		○		소계(a)		세출	○		○		소계(b)		□ 총 비용(b-a)			<p>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u>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이----- ----- ----- 표시한다.</u></p> <p>③ ~ ⑦ (개정안과 같음)</p> <p>[별지 제2호서식] (앞쪽) ○○○안 비용추계서</p> <p>3. 비용추계의 결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2"></td> <td align="center">연도</td> </tr> <tr> <td align="center">구분</td> <td></td> <td></td> </tr> <tr> <td align="center" rowspan="3">지출</td> <td align="center">○</td> <td></td> </tr> <tr> <td align="center">○</td> <td></td> </tr> <tr> <td align="center">소계(a)</td> <td></td> </tr> <tr> <td align="center" rowspan="3">수입</td> <td align="center">○</td> <td></td> </tr> <tr> <td align="center">○</td> <td></td> </tr> <tr> <td align="center">소계(b)</td> <td></td> </tr> <tr> <td align="center" colspan="2">□ 총 비용(a-b)</td> <td></td> </tr> </table> <p>[별지 제2호서식] (뒤쪽)</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align="center"><u>작성요령</u></p> <p>1. 비용추계 요약</p> <p>1. 비용발생 요인 : ----- -----<b>재정지출</b>----- -----<b>재정수입</b>----- ----- ----- -----</p> </div>			연도	구분			지출	○		○		소계(a)		수입	○		○		소계(b)		□ 총 비용(a-b)		
		연도																																																																					
구분																																																																							
세입	○																																																																						
	○																																																																						
	소계(a)																																																																						
세출	○																																																																						
	○																																																																						
	소계(b)																																																																						
□ 총 비용(a-b)																																																																							
		연도																																																																					
구분																																																																							
세입	○																																																																						
	○																																																																						
	소계(a)																																																																						
세출	○																																																																						
	○																																																																						
	소계(b)																																																																						
□ 총 비용(b-a)																																																																							
		연도																																																																					
구분																																																																							
지출	○																																																																						
	○																																																																						
	소계(a)																																																																						
수입	○																																																																						
	○																																																																						
	소계(b)																																																																						
□ 총 비용(a-b)																																																																							

<참고> [별지 제2호 서식] 수정의견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 ○○○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							
	소계(a)							
수입	○							
	○							
	소계(b)							
□ 총 비용(a-b)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 5. 덧붙이는 의견

### 6. 작성자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작성요령

###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재정지출의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분권·특별)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5. 덧붙이는 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부서명 또는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5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의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요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상 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 의안에 관련된 용어를 일괄 삭제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특히 본 조례안 제8조에 신설된 자료의 요청과 적극협조 규정은 비용추계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협조받아 보다 정확한 비용추계서를 의원 및 위원회에 제공하여 의안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이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동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의원의 자료요구권과는 성격에서 차이가 있고, 소관부서와 의원발의안 등의 비용추계 주체 사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
- 서울시 기획담당관에서 자료협조 대상에 교육감을 삭제하고 이는 별도의 서울특별시 교육청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통해 다룰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 비용추계 대상에 의원발의 및 위원회 제안 의안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정비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용추계 결과를 나타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출’을 ‘재정지출’로, ‘세입’을 ‘재정수입’으로 조례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존

조례 제5조제2항의 ‘세출’ 및 ‘세입’의 표현도 각각 ‘재정지출’ 및 ‘재정 수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그밖에 현재 시장세출 비용추계서의 일부는 ‘세입’ 또는 ‘세출’의 용어의 혼동 혹은 비용추계 대상에 대한 혼동으로 사업집행을 위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세출액을 세입부분에 동일하게 기재하거나, 기 운영 사업의 경우 순지출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데도 기존의 지출금액을 그대로 비용추계에 반영하는 일부 오류가 발견되고 있어, 향후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부서에서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에 대한 이해와 비용추계서 작성 요령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임.

담당 연락처	02-2180-7689
--------	--------------